

하자보수기간

	구 분	하자보수 책임기간	중요시설여부
1.대지조성공사	가.토공사	2년	●
	나.석축공사	2년	●
	다.옹벽공사	2년	●
	라.배수공사	2년	●
	마.포장공사	2년	●
2.옥외급수	가.공동구공사	2년	●
	나.지하 저수조공사	2년	●
	다.옥외위생(정화조)관련공사	2년	●
	라.옥외급수 관련공사	1년	
3.지정 및 기초		3년	
4.철근콘크리트공사		3년	
5.철골공사	가.구조용 철골공사	3년	●
	나.경량 철골공사	2년	●
	다.철골 부대공사	2년	●
6.조적공사		2년	●
7.목공사	가.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	2년	●
	나.수장목공사	1년	
8.창호공사	가.창문틀 및 문짝공사	1년	
	나.창호 철문공사	1년	
9.지붕 및 방수공사		3년	●
10.마감공사	가.미장공사	1년	
	나.수장공사	1년	
	다.칠공사	1년	
	라.도배공사	1년	
	마.타일공사	1년	
11.조경공사	가.석재공사	2년	●
	나.잔디심기공사	1년	
	다.조경시설물공사	1년	
12.잡공사	가.온돌공사	2년	●
	나.주방가구공사	1년	
	다.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	2년	●
13.난방.환기공기 조화 설비공사	가.열원기기 설비공사	2년	●
	나.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	2년	●
	다.덕트 설비공사	2년	●
	라.배관 설비공사	2년	●
	마.보온공사	1년	
	바.자동제어설비공사	2년	●
14.급/배수 설비공사	가.급배수공사	2년	●
	나.온수공급 설비공사	2년	●
	다.배수.통기 설비공사	2년	●
	라.위생기구 설비공사	1년	
	마.철 및 보온공사	1년	

15.가스 및 소화설비 공사	가.가스설비공사	2년	●
	나.소화설비공사	2년	●
	다.배연설비공사	2년	●
16.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	가.배관/배선공사	2년	●
	나.피뢰침공사	2년	●
	다.조명설비공사	1년	
	라.동력설비공사	2년	●
	마.수.변전 설비공사	2년	●
	바.전기기기 공사	2년	●
	사.발전설비공사	2년	●
	아.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	3년	●
17.통신.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	가.통신.신호 설비공사	2년	●
	나.TV공정 설비공사	2년	●
	다.방재설비공사	2년	●
하자범위	공사사의 잘못으로인한 균열, 처짐, 비틀림, 들뜸, 침하, 파손, 붕괴, 누수, 누출, 자동 또는 기능불량, 부딪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,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,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.		
비고	<p>[주택법시행령 개정 2005.09.16.]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 담보책임기간</p> <p>1.하자의 범위 -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. -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.</p> <p>2.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-기둥, 내력벽(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) : 10년 -보, 바닥 및 지붕: 5년</p>		

하자보수가 되지않는 사항